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05
----------	------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의 반영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나.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항을 신설(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항 등)

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규정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신설(안 제12조의2제4항)
 - 1건당 기준가격: 취득의 경우 2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 1건당 기준면적: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라.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 (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달성군 지역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달성군지역은 2천만원 이하”) 삭제(안 제5조제2항제3호)
-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한다”라는 규정 신설(안 별표)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붙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처분”을 각각 “관리·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매각하고자 할”을 “매각하려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를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민간위원”을 각각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제5항 중 “민간위원에게 대하여는”을 “위촉직 위원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34조”를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취득·처분의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
- 나. 취득·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달성군지역은 2천만원 이하)”를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한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를 “따라 공유재산대장을 갖추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시”를 “실태조사 시”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대장”으로, “대부시”를 “대부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개발사업구역 안”을 “재개발사업구역 안”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부인”을 “기부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무상사용 기간)”을“(사용료 면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를 “사용료 면제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로 하며,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을 “사용허가해서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수의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호의 규정”을 “제18호”로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를 “사용허가부를 갖추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따른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전대(轉貸)하는”을 “전대하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영 제19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허가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제25조의2 및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24조 중 “대부기간중”을 “대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수익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계약 또는 특정인에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공단지 내”를 “농공단지 안”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로 한다.

제28조제5항제5호 중 “제5호 규정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중 “징수하되”를 “징수하되,”로, “2인”을 “2명”으로, “감정평가법임등”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용면적은”을 “공용면적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를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관리하고, 사용허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4조 중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으로 하고, “부분에 대하여”를 “부분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보훈 처장”을 “국가보훈 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39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투자지역안”을 “투자지역 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안”을 “용지 안”로 한다.

제41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를 “구분한다) 으로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각 호”를 “각 호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부과·징수하고자 할”을 “부과·징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납부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2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7호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사용·수익하게”를 “사용허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2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⑪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제2항 중 ““무상사용수익””을 ““무상사용허가””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무상사용수익””을 ““무상사용허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하여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u>----- -----.</p>
<p>제3조(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p> <p>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시유재산 <u>관리처분에</u>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 <u>관리처분</u>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가 공유재산을 <u>매각하고자 할</u>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p> <p>① ----- ----- ----- ----- <u>관리·처분</u>----- -----.</p> <p>② ----- <u>관리·처분</u> ----- ----- <u>매각하려는</u> ----- -----.</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u>법 제16조의 규정</u>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u>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u>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u>법 제16조제1항</u>----- -----<u>관한 자문에</u> -----<u>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u> ----- -----.</p>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 5. (생략)

④ (생략)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의2(심의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민간위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

② -----

----- 위촉직 위원-----.

③ -----

----- . ---위촉직 위원-----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에게 -----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① 공유 재산심의회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제5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
에 다른 법률-----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취득·처분의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달성군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생략)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유재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8.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
회-----
-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 토지
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4.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대장) -----
----- 따라 공유재산
대장을 갖추고, -----

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 필요한 -----
-----.

제8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

1회 이상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태조사
시 -----
----- 공유재산 대장-----
----- 대부 시-----
-----.

1. (현행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안의 재산

3. ~ 5. (생략)

④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 재개발사업구역 안-----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략)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부자-----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
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는 경
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
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
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
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은 신
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
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 사용허가 대
상-----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면제 기간) -----
-----사용료 면제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받은-----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
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② -----

사용허가해서는-----

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

② -----
----- 받은 자 -----

----- 전대(轉貸) -----

③ ----- 사용허가 -----

----- 전대하는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 4. (생략)

제23조(일반재산의 준용) ① 행정재산의 수익계약 사용·수익허가 조건 사용료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회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의 준용) ① -----
----- 사용허가 조건, -----

-----사용허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고권 배제) -----

----- 대부
기간 중-----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대부·매각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4. (생략)

③ -----사용 중-----

-----.

제25조의2(수의계약 또는 특정인에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

-----.

1. (현행과 같음)

- 2. -----

----- 농공단지 안-----

3.·4. (현행과 같음)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
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략)

1.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7. ~ 9.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5. -----
---- 산업단지 안-----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제5호에 따른 -----

6. ---- 50명 이상-----

7. ~ 9.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

-- 징수하되, -----2
명-----

----- 감정평가법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은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삭제

등-----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부지면적-----
-----.

③ -----

-----.
----- 공용면적의 -----
-----.

아.·자. (생략)

2.·3.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2. (생략)

④ (생략)

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⑥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

아.·자.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허가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① -----사용허가 또는-----.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하고, 사용허가 또는-----.

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
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대부료등보
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
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
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
· 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벤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사
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

----- 부분은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생략)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생략)

④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보훈처장-----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 각 호-----

⑤ 삭 제

⑥ (생 략)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2. (생 략)

3. 시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시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

1. 2. (현행과 같음)

3. -----

투자지역 안-----

4. -----
----- 용지 안-----

제41조(신탁의 종류) -----
----- 경우 -----

----- 구분한다)
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 7. (생략)

②·③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 -----
----- 각 호의 기준 -----
-----.

1. ----- 증감 등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
- 부과·징수하려는 -----

----- 따라 -----
-----.

② -----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81조제1항-----
납부하려는 경우 -----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85조에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은닉재산의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따른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박 천 일